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저작권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저작재산권자에 대한 보상금의 적극적인 분배를 유도하기 위하여, 미분배 보상금의 사용을 허용하는 기준을 강화하고, 과도한 형벌 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배타적발행권자 등에 대하여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저작권법」이 개정(법률 제 20841호, 2025. 3. 25. 공포, 2025. 9. 26.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미분배보상금의 사용 허용 기준이 ‘5년’에서 ‘10년’으로 조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 정비(안 제7조제4호 및 안 제18조제2항)
- 나. 표지 의무를 위반한 배타적발행권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안 제77조제3항 및 별표 6)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호 중 “5년”을 “10년”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5년”을 “10년”으로 한다.

제7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142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영은 2025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6]

과태료의 부과기준(제77조제3항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별 부과기준의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처분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과태료 부과처분 후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를 적발한 날로 한다.
-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단, 적발된 날로부터 1년 이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를 정할 때에 반영하지 않는다.
- 다. 과태료 부과 금액은 위반행위자의 사업규모, 위반행위의 동기·정도,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하여 처분 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5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법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42조 제3항	150	300	500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보상금 분배 공고) 보상금 수령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상금 분배에 관한 사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과 보상금수령단체 및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보상금 분배 공고) ----- ----- ----- ----- ----- ----- ----- ----- -----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지급 기한 및 미분배 보상금 (보상금 분배 공고를 한 날부터 <u>5년</u> 이 경과할 때까지 분배하지 못한 보상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 처리 방법	4. ----- ----- -- <u>10년</u> ----- ----- -----
5. (생략)	5. (현행과 같음)
제18조(상당한 노력의 기준) ① (생략)	제18조(상당한 노력의 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50조에 따라 이용하려는 저작물이 법 제25조제10항 본문(법 제31조제6항에서 준용	② ----- ----- -----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상금 분배 공고를 한 날부터 <u>5년</u>이 경과한 미분배 보상금 관 련 저작물, 그 밖에 저작재산권 자나 그의 거소가 명확하지 않 은 저작물에 해당하고 문화체육 관광부장관이 그 저작물에 대하 여 다음 각 호의 모든 노력을 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상 당한 노력의 모든 요건을 충족 한 것으로 본다. 1. ~ 3. (생 략) 제7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 ② (생 략) <u><신 설></u>	----- ----- <u>10년</u>----- ----- ----- ----- ----- ----- ----- ----- -----. 1. ~ 3. (현행과 같음) 제7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u>법 제142조제3항에 따른 과 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 다.</u>
--	---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연 락 처	(044) 203 - 2476